

##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

자본시장법 제247조(운용행위감시 등)제3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9조(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)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는 아래 내용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탁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

\*\*\* 아 래 \*\*\*

감시대상	집합투자업자명	코레이트자산운용(주)
	집합투자기구명	코레이트 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[주식]
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일종목증권(지분증권) 투자비율 13.13%</li> </ul>	
집합투자업자 지시내용 중 법령 등 <sup>1)</sup> 을 위반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본시장법 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제1항제1호 가목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일종목증권(지분증권) 투자 제한 10% 이하</li> <li>- 위반일자 : 2022.04.27 (수)</li> <li>- 동일종목증권(지분증권) : LG에너지솔루션 주식</li> <li>- 위반비율 : 3.13% (13.13% 보유 중)</li> </ul> </li> </ul>	

주1) 집합투자계약, 투자설명서 포함(법과 동일한 경우 법만 표기)

2022년 05월 10일

신탁업자 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장



담당자 : 팀장 박달수 (TEL 02-2002-2176)

하나은행